

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۷ 월 ۱۹ 일

여 수 시 장 ۲۰۲۴. ۷. ۱۹



여수시 조례 제2082호

붙임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082호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침 제5조에 따라 민관협의회 구성 요건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권역별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p> <p>② (생 략)</p> <p>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인허가 및 해상풍력사업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 	<p>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민관 협의회 구성 요건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기관에서 전기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기계공학, 법률학, 경영학, 기상
학, 해양수산학 등의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
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대표자 또는 상임임
원으로 3년 이상 있거나 근무
한 사람

5. 환경 · 시민 관련 단체에서 3
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자

7. 해상풍력발전사업 지역의 주
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8. 그 밖에 신 · 재생에너지 분
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